

국 토 교 통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 설계변경 미이행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경상남도(○○과)에서는 ○○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사업비의 6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5. 2. 16. ○○○도 ○○시 ○○○○로 ○○에 있는 ○○○○○○(주) (대표자 ○○○)와 ‘○○○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’을 총 공사부기금액 7,817,870,000원¹¹⁴⁾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2. 24. 착공하여 2018. 2. 22.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,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.

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, 새로운 기술·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,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.

한편 위 공사의 제방 성토재¹¹⁵⁾는 공사 구간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설계내역에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가 1식 단가로 반영되어 있다

그런데 경상남도(○○과)에서는 2015. 4. 21. 위 공사의 하천제방 축조를 위한 성토재를 공사 구간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

114) 2016. 8. 4. 총공사부기금액이 7,786,225,000원으로 변경계약함

115) 당초 토취장 : 김해시 가야로 182 (L=22Km)

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는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, 2016. 3. 23. 설계변경 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를 설계에서 삭제하지 않았으며, 2016. 11. 30. 감사일 현재까지도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29,811,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토취장 위치 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반영되어 있는 토취장 사용료 및 복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29,811,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